

문서번호	BSKS-2-1-03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1/10

1986.03.01.제정 1992.03.01.개정 1997.03.03.개정 2000.03.02.개정 2004.03.02.개정 2011.10.01.개정 2014.02.01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11.24.개정 소판부서 : 산학처

제 1 장 동아리 활동 지침

제1조(의의) 동아리활동은 대학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한 과외활동의 하나로서 학생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활동을 말한다.

제2조(목적)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
- 1. 학생의 자기 적성 발견의 기회로 여가선용에 도움이 된다.
- 2. 다양한 흥미개발로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온다.
- 3. 타인과의 협력관계를 배워 사회성을 배양한다.
- 4.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.
- 5. 새 기술과 능력을 연마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실용성 및 상용성을 향상시킨다.

제3조(내용) 각 동아리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운영 방향을 정해야 한다.

- 1. 프로그램의 계획시기는 학기초 혹은 학년초로 하되 1학기 혹은 1년의 계획안을 수립 한다. 그리고 구체적인 주간. 월간 계획을 세운다.
- 2. 계획전에 회원의 요구와 흥미를 조사한다.
- 3. 동아리 자체의 목표와 동아리 상호간에 횡적 관계를 고려한다.
- 4. 학교의 행사, 수업, 시설, 주위 환경조건과 예산을 고려한다.
- 5. 프로그램 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인 행동 항목으로 고려한다.
- 6. 활동 후 또는 정기적으로 실행한 활동을 반성, 평가하며 활동의 내용과 조직을 발전시킨다.
- 제4조(운영) ① 각 동아리는 설립목적 및 취지에 따라 분과로 구성·운영하며, 흥미와 취미 여 가 선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와 기능성을 갖춘 전공 및 창업동아리로 구분한다.
 - ② 동아리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.
 - ③ 동아리 지도교수의 권한과 의무는 본 규정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


문서번호	BSKS-2-1-03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2/10

④ 동아리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한다.

제 2 장 권리와 책임

- **제5조(권리)** ① 대학에서 허가 혹은 이미 설치된 매개체를 통한 개인 단체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.
 - ② 대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한 단체의 조직 및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다.
 - ③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대학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책임) ① 교육적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한다.

- ② 동아리활동에 있어서 제반 행동이나 의사표현은 대학생활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학생들의 복리에 봉사하며, 대학의 가장 고귀한 목적달성에 이바지하는 행동이나 의사표현이 되도록 노력한다.
- ③ 어떤 특수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견이나 또는 협소한 목적의식에서 전체 대학의 조화된 복지에 방해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.
- ④ 삭제 <2000.03.02.>

제 3 장 조 직

- **제7조(동아리 조직 구성)** ① 동아리의 조직 구성은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전공 및 창업동아리의 경우에는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.
 - ② 매학기초 20일 이내 동아리등록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처에 제출,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.11.24.>
 - 1. 동아리 등록원 1부 <개정 2020.09.25.>
 - 2. 지도교수 동의서 1부<개정 2020.09.25.>
 - 3. 전 학기 활동사항 보고서 1부
 - 4. 사업계획 및 예산서 1부 <개정 2020.09.25.>
 - 5. 회원명단 1부 <개정 2020.09.25.>
 - 6. 회칙 1부
 - ③ 동아리의 장이 되고자 할 때는 회원의 호선으로 성적이 B(3.00)급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,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자격이 정지된다.

제8조 삭제

제9조(행사계획서) 각 동아리 회장은 행사 5일전 까지 행사계획서(산학처 소정용지)를 작성하여 산학처를 경유,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09.25.>



문서번호	BSKS-2-1-03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3/10

제10조(구성 및 활동 금지)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동아리의 구성과 활동은 금지한다.

- 제11조(계속원 및 활동제한) ① 승인된 동아리의 활동은 한 학기로 하고, 계속 활동을 원할 때에는 매학기 초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처를 경유,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해체된 것으로 간주된다. <개정 2020.09.25.>
 - 1. 사업계획 및 예산서 1부(산학처 소정용지)<개정 2020.09.25.>
 - 2. 회원명단 1부
 - 3. 전 학기 활동사항 보고서 1부(산학처 소정용지)<개정 2020.09.25.>
 - ② 동아리의 회칙 및 기타 실적보고서를 심사 검토하여 실적이 부진한 동아리 또는 학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동아리는 그 활동을 제한 또는 징계할 수 있다.

제 4 장 집회·인쇄물·광고

제12조(집회회수) 삭제 <2000.03.02.>

제 5 장 지도교수의 권한 및 의무

- 제13조(지도교수의 권한) ① 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서 동아리의 집회를 임의 소집할 수 있다. 또한 동아리활동이 미온적이거나, 목적에 위배될 시에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- ② 회원 중 학생의 신분으로서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해를 끼치는 학생에 대해서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지도교수는 동아리 집회 시 집회의 목적이 학생신분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집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집회 도중이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 - ④ 삭제 <2003.03.02.>
 - ⑤ 지도교수는 회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포상대상에 추천할 수 있다.
- 제14조(지도교수의 의무) ① 지도교수는 허가된 동아리의 집회 또는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.
 - ② 지도교수는 회원이 학생신분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올바른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 격려하여야 한다.
 - ③ 지도교수는 동아리의 행사계획과 결과를 수시 지도하고 점검해야 한다.

제 6 장 상 벌 관 계





문서번호	BSKS-2-1-03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4/10

제15조(포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 및 지도교수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총장은 포상할 수 있다.

- 1. 학교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
- 2.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
- 3.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

제16조(장계)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
- 1. 차기 집회중지 : 집회신고서 미제출시
- 2. 한 학기간 활동 중지
 - 가. 불법 집회시
 - 나. 불법한 인쇄물의 제조 및 배포
 - 다. 불법한 게시물의 광고 및 게시
 - 라. 동아리활동이 극히 부진할 시
- 3. 해체 및 관련 임원 처벌
 - 가. 전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
 - 나. 삭제 <2000.03.02.>

제 7 장 부 칙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



문서번호	BSKS-2-1-03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5/1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7.03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교학처』에서 『산학취업처』로 이관하고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,『산학취업처』를 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3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6/10

[별지 제1호 서식]

동 아 리 등 록 원

동아리명				동아리 구분		
【 활동목적 및	활동범위 】					
동아리대표자		과(계열)	학년 반성	평 : (<u></u> 학번 :)
연 락 처	자택 :		휴대폰	:		
지도교수			과(계열)	성명 :		
회 원 수	총원 :	명(남	: 명, 여	며: 명)	

규정 제7조에 의거 학년도 학기 동아리 등록원을 제출합니다.

20 . . .

동아리대표자 : (인)

부산경상대학교총장 귀중



문서번호	BSKS-2-1-03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7/10

[별지 제2호의1 서식]

지도교수동의서

본인은 아래 동아리 지도교수에 동의하며,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동아리 운영규정 제5장에 명시된 지도교수의 권한 및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동아리명	
동아리대표자	

20 . . .

지도교수: (인)

부산경상대학교총장 귀중



동아리명

일반동아리 운영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03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8/10

[별지 제3호 서식]

동아리 활동사업 및 예산계획서

		<u> </u>		
활동시기 (년월일)	활동사업 및 예산계획	세부 예산내역	소요금액	비고

학년도 학기 동아리 활동 및 사업 예산계획서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3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9/10

[별지 제4호 서식]

회 원 명 단

동아리명	

연 번	학과/계열	학년 (반)	학 번	성 별	성 명	전화번호 (자택)	전화번호 (휴대폰)	비고
		3 -	1-11 -1-1-	1 -1 41	-1-1	l지스 어스니		

◎ 휴학· 자퇴· 제적자는 동아리회원 자격을 가질수 없습니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3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10/10

[별지 제5호 서식]

직전학기 동아리활동 보고서

동아리명	
------	--

활동기간 (년월일)	활동기관	활 동 내 용	참 여 인원수	소요금액	비고
		-1 -1 -1 -1 -1 -1 -1 -1 -1 -1 -1 -1 -1 -			

※ 활동사항은 관련 실적(사진, 자격증 사본, 수상 증명서 등)물 첨부바람